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일부 경미한 변경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 협의를 위임하고 있으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는 사전 협의 사항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가 시행되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구역 경계만 일부 변경된 경우 등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시켜 효율적이고 신속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안 제69조의2)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시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와의 모든 사전 협의 업무를 국토교통부 산하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도록 함.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등(안 제4조 등)

현재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유인 100분

의 30 미만의 면적 증감 외에 위치의 변경도 포함하고, 그 외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다수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국가가 우선 지원가능한 기반시설의 범위(안 제58조)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기존 교통·공간·유통 공급 시설 외에 공공·문화 시설도 포함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면적”을 “면적 증감 또는 위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증감”을 각각 “증감 또는 위치 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란”을 “이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적”을 “면적 증감 또는 위치”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변경하려”를 “변경하거나 또는 위치를 변경하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증감”을 각각 “증감 또는 위치 변경”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법 제55조제2항”을 “법 제55조제3항”으로,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5조제3항”을 “법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4. 제11조 각 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 ----- ----- ----- -----.
1.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도로의 건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u>면적</u>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 ----- --- <u>면적 증감 또는 위치</u> --- ----- -----
가.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u>증감</u>	가. ----- ----- ----- ----- <u>증감 또는 위치</u> <u>변경</u>
나.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u>증감</u>	나. ----- ----- ----- ----- <u>증감</u> <u>또는 위치 변경</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생 략)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변경. 다만, 지역개발사업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가. 지역개발사업구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

-----이란 각각 ---

-----.

1. -----

면적 증감 또는 위치 -----
-----. -- 변경하거나 또는 위치를 변경하려-----

-----.

가. -----

제곱미터 미만의 증감

나. 지역개발사업구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제외한
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
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
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다. (생략)

2. ~ 6. (생략)

제5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
금 등의 지원) ① (생략)

② 국가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
라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보조
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발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다.

제69조의2(권한의 위임) ① 국토

----- 증감 또는
위치 변경

나. -----

--- 증감 또는 위치 변경

다.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제5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
금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55조제3항-----

----- 라목-----

-----.

③ 법 제55조제4항-----

--.

제69조의2(권한의 위임) ① ----

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에게 위임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u><신설></u> 3. 4. (생략) ② (생략)	----- ----- ----- -----.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 <u>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u> <u>변경에 대한 협의</u>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제11조 각 호에 따른 지역개 <u>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u> <u>에 대한 시·도지사와의 사전</u> <u>협의</u> 5. 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65